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35 발의연월일: 2024. 8. 2.

발 의 자:전종덕·박홍배·서미화

김남희 · 정혜경 · 송재봉

염태영 · 김재원 · 윤종오

송옥주 • 박희승 • 한창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하고 있음.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한 것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폐업 또는 휴업은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및 그 가족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공공의료기관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 2항 신설).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 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1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
			관 개설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인 경우 의료업을 폐업
			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 시
			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